

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2월 16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2월 2일, 고영찬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2월 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4년 2월 16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 개정에 의하여 유해조류 먹이 주기 행위 금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법적으로 마련됨에 따라,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건물 부식 및 악취를 비롯하여 구민 생활에 유해조류가 끼치는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- 2)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3)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(안 제4조)
- 4) 유해조류 먹이 주기 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규정(안 제5조 및 안 제6조)
- 5) 유해조류 퇴치 기동반 운영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제정 이유

- 본 조례안은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위임 사항에 따라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는 유해 조류의 피해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2) 주요 내용

가)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
- 정의 :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구체적 유해조류를 규정함

나)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다)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(안 제4조)

- 유해조류 퇴치에 관한 사항
- 유해조류 먹이 주기 행위 점검·단속에 관한 사항
- 거리 등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가지 가로청소 등

라) 유해조류 먹이 주기 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규정(안 제5조 및 안 제6조)

-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조류 먹이주기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과태료 부과를 규정함

마) 유해조류 퇴치 기동반 운영(안 제7조)

- 유해조류 퇴치를 위한 기동반 운영 및 사업 위탁의 근거를 규정함

3) 검토 의견

- 최근 집비둘기와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는 등 유해조류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유해야생동물의 피해 관리를 위한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지자체의 다양한 피해예방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.

○ 비둘기 먹이주기 관련 언론보도('22.7월, MBC 실화탐사대)



○ 전국 집비둘기 개체수 및 민원 발생 건수

구 분	개체수*	민원발생 건수
서울	8,073	1,177
부산	4,778	301
경기	2,779	295
충북	4,780	23
경남	2,298	29
기타	4,993	483
계	27,701	2,308

* 지자체에서 집비둘기 피해지역 대상으로 취합한 개체수임(2021년 기준)

※ 출처 : 환경부

- 본 조례안은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위임에 따라 유해조류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및 관리 방안을 규정하고 점검·단속 등의 근거 마련으로 유해조류 배설물로 인해 주민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